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반려동물용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고용을 창출하고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판로개척 부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용품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반려동물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내외 제품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 접수기간 : 2024. 2. 21.(수) ~ 2024. 3. 15.(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 ※ 단, 업력이 3년 미만이나 대표자가 신청기업 외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사업장이 있고, 그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하는 기업
 - ※ 상세내용 관리지침 3~5페이지 참조 또는 별첨4 참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또는 온라인 홍보 비용 또는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
(총 비용(부가세 제외)의 80%이내, 400만원 한도)

판로개척 부문 분야별 상세 지원 내용	
국내 전시회 참가	- 국내 반려동물용품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부스 임차료에 한해 지원 가능, 기타 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
온라인 판로개척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제품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상세페이지, 홈페이지, 배너, 일반 영상, 3D영상(AR, VR 및 기타 3D 적용 영상물) 등의 SNS 게시용 콘텐츠 제작비 지원 [온라인 광고 노출] - 제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광고 노출비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의 온라인 플랫폼 광고노출 비용 지원
컨설팅 지원	- 기업 마케팅,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분석 및 대책 연구, 상담·자문 등 컨설팅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컨설팅의 경우 1일 2시간 이상 30만원 한도로 최대 25회까지 가능 (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이며 추가 발생비용은 기업 부담)

-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 동일 아이টে으로 他기관 및 他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기업당 400만원 한도 내 판로개척 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요구서식)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과제 추진	신청기업 심사	• 서류심사
	▽	
	지원결정통지	• 선정결과 개별통보(선정 시 지원협약통지 및 안내문 발송) 이후 과제 진행
	▽	
과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국내 전시회	• 전시 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개척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진행(수혜 효과 추이 기록)
	컨설팅	• 컨설팅 진행(수행일지 작성)
	▽	
과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참가비용 선납 (지원기업—주최사, 대행사, 플랫폼 제공기업 등)	• 전시박람회 참가 및 비용(참가비, 부스임차료 등(VAT포함)) 전액 완납 •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추진 및 비용 전액 완납 • 컨설팅 비용 전액 완납 • 입금 시 온라인 송금 규정 준수(세금계산서 발행 必 / 카드,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완료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진흥원)	• 결과물 등 완료서류 제출(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	
과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과제 검토	• 완료 서류 검토, 소요비용·세금 완납 여부 점검
	▽	
과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진흥원—지원기업)	• 지출 및 과제 결과물 검토 후 요청계좌 입금 •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지원금 환수

II.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후 접수 진행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 사항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 사항	
공 통	
- 대금 지불 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용역기업(대행기관, 주최사, 플랫폼 제공기업 등을 총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함 - 상용화 부문과 판로개척 부문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선정은 불가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에게 있음	
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는 반드시 온라인 혹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주최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신청 가능한 전시회는 지원결정일 ~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및 박람회에 한함 - 전시회 참가 완료보고서에는 참가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사진 3장 이상 첨부
온라인 판로개척	- 홍보비는 반드시 온라인 혹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며, 대행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광고노출비용의 경우 결제방법이 카드밖에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가능(진흥원과 사전협의)) - 홍보 과제 추진 기간은 11월 16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완료보고서에는 홍보 수혜 효과(팔로워 수, 조회 수, 광고로 인한 매출액 증감)를 알 수 있는 캡처 사진을 첨부해야 함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수입료는 1일 2시간 이상 30만원 한도로 최대 25회까지 가능 (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이며 추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과제 수행시마다 수행일지(증빙사진 포함)를 필수 작성해야함 - 과제 완료 후에는 수행일지(회차별), 결과보고서, 관련 제공자료 등을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국내 전시회 참가)

분류	내용	제출여부
필수서류	① [서식 제1호] 국내 전시박람회 부문 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식 제2호] 국내 전시박람회 부문 추진계획서 1부	
	③ [서식 제3호]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서식 제4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 신청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 시 아래 '선택서류 중 ② 서류' 추가 제출 필수	
	⑥ 2022년 확정재무제표 1부 - 홈택스(국세청)에서 발급가능	
	⑦ 공장등록증명 1부 - 공장만 경기도에 소재 시 필수제출 서류임, 본사 도내 소재 기업도 제출시 가점대상임 - 정부24에서 발급가능	
	⑧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⑨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또는 참가신청서) 1부	
선택서류	① [가점사항] 보유인증서 사본 - 경기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 국내외 특허 및 규격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등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4p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개인)	
	③ [서식 제6호] 이의 및 구제 신청서	
	④ 기업/제품 홍보물	

○ 제출서류 (온라인 판로개척)

분류	내용	제출여부
필수서류	① [서식 제1호] 온라인 판로개척 부문 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식 제2호] 온라인 판로개척 부문 추진계획서 1부	
	③ [서식 제4호]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부	
	⑤ [대행기관 有] - [서식 제3호] 온라인 판로개척 부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1부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 견적서 1부(대행기관 양식)	
	⑥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 신청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 시 아래 '선택서류 중 ② 서류' 추가 제출 필수	
	⑦ 2022년 확정재무제표 1부 - 홈택스(국세청)에서 발급가능	
	⑧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선택서류	⑨ 공장등록증명 1부 - 공장만 경기도에 소재 시 필수제출 서류임, 본사 도내 소재 기업도 제출시 가점대상임 - 정부24에서 발급가능	
	① [가점사항] 보유인증서 사본 - 경기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 국내외 특허 및 규격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등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4p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개인)	
	③ [서식 제6호] 이의 및 구제 신청서	
	④ 기업/제품 홍보물	

○ 제출서류 (컨설팅 지원)

분류	내용	제출여부
필수서류	① [서식 제1호] 컨설팅 부문 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식 제2호] 컨설팅 부문 추진계획서 1부	
	③ [서식 제3호] 컨설팅 부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1부	
	④ [서식 제4호]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⑤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 신청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 시 아래 '선택서류 중 ② 서류' 추가 제출 필수 - 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종이어야 함	
	⑦ 견적서 1부(대행기관 양식)	
	⑧ 2022년 확정재무제표 1부 - 홈택스(국세청)에서 발급가능	
	⑨ 공장등록증명 1부 - 공장만 경기도에 소재 시 필수제출 서류임, 본사 도내 소재 기업도 제출시 가점대상임 - 정부24에서 발급가능	
	⑩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선택서류	① [가점사항] 보유인증서 사본 - 경기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 국내외 특허 및 규격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등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4p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개인)	
	③ [서식 제6호] 이의 및 구제 신청서	
	④ 기업/제품 홍보물	

○ 평가방법 : 선정평가표에 의해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총 계	100	·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친 총점
사업연관성	30	· 사업계획, 성장기대, 지원내용, 마케팅전략
타당성	35	· 사업대상, 인지도, 소요비용, 기대효과
재무건전성	10	· 매출액순이익율, 매출규모
기타	25	· 공장보유여부, 기술수준, 기업인증, 신규기업, 연계지원

※ (신규지원)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판로개척 부문 미수혜기업 대상 가점 부여

※ (연계지원) 반려동물용품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2021 ~ 2023년) 중 사업화 지원사업 미수혜기업 대상 가점 부여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별첨2 참조)의 경우

서류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 법위반기업은 일괄 조회 예정

- 예비 기업 선정 : 최초 선정 시 탈락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을 0.5배수 내외로 선정하고 최초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등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60점 이상 과제에 한함)

○ 세부분야별 과제추진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부문	세부지원분야	과제 추진 기간	지원비율	지원한도
판로개척	전시회 참가	국내 전시회 참가	총 소요금액의 80%	400만 원
	온라인 판로개척	홍보 콘텐츠 제작		
		광고 노출		
	컨설팅 지원	컨설팅		

III. 신청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회계기업(단, 법원의 회계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계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IV.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 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중도 포기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수혜 기업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면제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위반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신청제외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부당 수취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V.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 최문영 대리
(TEL) 031-259-6491 (E-mail) animal@gbsa.or.kr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782호, 2023. 10. 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양육·관리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별첨 2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경 기 도 지 사

-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 적용사업 :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 문의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

별첨 3 법위반 사실확인서 서류 확인사항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 조회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내 용)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위반법률, 조치일 등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기업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조 회) ①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②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道 에너지관리과, 기후환경관리과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위반사실 조회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 · 군 (조 회)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 공문 발송 시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처분기관 현황 참고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확 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

별첨 4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범위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범위(관련근거 :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주업종이어야함.
 - 정의 : 제조업과 직·간접적 융합발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
 - 특징 :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 제공
 - 중요성 :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
- 주업종의 기준 :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하나만을 주업종으로 취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 증빙자료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개인)

업종	코드	세부업종	기준경비율코드
위생서비스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900200
	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900201
	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900101
	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900100
	3813~3823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900101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0102
	3831~2	금속류 및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51104, 371000, 372000, 900300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	4711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910, 521911
	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523531, 523323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523111, 523114, 523116, 523120, 523131
	4791	통신 판매업(전자상거래, 기타통신판매업)	525101, 525102
운수 및 창고(산업)	4930~4940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용달,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1~5, 602307, 602308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602309, 630701, 630702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늘찬 배달업)	630901, 641201
	5210	보관 및 창고업(일반, 냉장 및 냉동, 농산물, 위험물품 보관업) 기타 보관 창고업	630201~2
	5294	화물 취급업(항공 및 육상, 수상 화물 취급업)	630101~2
출판	5811	서적 출판업(교과서 및 학습서적, 만화, 일반 서적)	221100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정기 광고간행물)	221200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900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유선 온라인, 모바일, 기타 게임)	722000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000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721000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29000
영화제작 배급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921304, 921501~2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21503
	5920	오디오품 출판 및 원판 녹음업	221300, 924901
방송(산업)	6010~6022	라디오 방송업	921301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921303
부가통신	6121	유선 통신업	642001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42003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42002, 642003
정보서비스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23000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42004

	6391	뉴스 제공업	724000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000
금융 및 보험(산업)	6412	일반은행(국내, 외국 은행)	659201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9202, 659205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659900
	6491	금융리스업, 개발금융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59203, 659204, 659206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59902
	6511~6530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사회보장, 건강,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개인, 사업 공제업, 연금업)	660100, 660301~3
		재 보험업	660101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671202
	6619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71201, 671900
	6620	손해 사업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00, 749904
광고	7131	광고 대행업	743002
	7139	기타 광고업(옥외 및 전시, 광고매체 판매,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743001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1300, 930920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41400, 741401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7211	건축 및 조정 설계 서비스업	742103, 742105
기타 공학관련 서비스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토목, 환경,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04, 742106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물질성분 검사, 기타 기술 시험, 검사)	742201, 742202, 742209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42101, 74210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수의업	852000
	7320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제품, 시각,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	749910
	73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49400, 930904
	7390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애니저, 통번역,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	749902, 749903, 749911, 749939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9921
	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국내, 국외 여행사업)	523990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630600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49200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49200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930916, 749200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문서작성, 복사)	749901, 749905, 749909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텔레마케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 포장 및 충전업)	749500, 749907, 749921
교육기관	8550	일반 교습 학원(외국어,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기타 일반교습)	809005, 809007
	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09003, 809004, 921902
	8562	예술 학원(음악, 미술, 기타 예술 학원)	809009, 809012
	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09005
	8564	사회교육시설	
	8565	직원훈련기관	741402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운전, 직업훈련학원)	809001, 809002, 809010, 809011
	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컴퓨터 학원)	809002
	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교육관련 자문평가, 기타교육지원)	930915, 930921
의료 및 보건	8610	병원(종합, 일반, 치과, 한방, 요양 병원)	851101~3
	8620	의원(일반, 치과,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한의원)	851201~851209, 851211~2, 851219, 851905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90	기타 보건업(앰블런스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기타 보건업)	851901~04, 851906~08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21901
	9012	공연단체(연극, 무용 및 음악, 기타 공연단체)	921402, 921403
	9013	자영 예술가(공연,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 대리업)	921401
문화서비스	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23100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23200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23300, 924905
	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3300

